

기안용지

분류기호	제415-1266	(전화번호) 75-1593	전 결 규 정 조 항
문서번호			결재 1977. 8. 26 시장
처리기간	1 주		
시행일자			
보존년한			

브조기관	계정부장 8/25	법
	행정부장	법무부장관
	도시계획부장	도시계획국장
기안책임자	김홍식	도시계획국장

경수합	각안참조	발신
유신		통제

제 목 도시계획시설 (공원) 설치 및 지적승인
 제 안 내 부 결 재
 1. 양시 관내 도시계획시설(공원) 중 쌍림동공원을 개설
 하여 있어 소 공원은 건설부령 제 299 호(63.4.26)
 로 정결된 후 2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지적표지가 되지
 않아 수락 실행 및 재결정하고 지적승인로서 하여

2. 이를 제2호인 보양 보호를 위하여 설치주변
 일대지역을 공원으로 설정하여 병과 증이 시행로서
 가능해 변경에 대하여는 양시 제12차(77.8.24)
 양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정된 사항이니 결재하여
 주청기 바랍니다.

첨부 1.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
 2. 도면 각 1부
 권고안. 고시안

고시번호	1977. 8. 25 제 201/8
담당자	법무부장관 법무담당관
	결재

시행결정. 제 호 도시계획시설(공원) 설치 및 지적승인

1. 건설부령 제 297호 (63.4.26)로 정정된 서울특별시 퇴계학설의 임무규정에 대하여 정정된 사항이므로 퇴계학설 제 14조 규정의 의거 순서에 하고 퇴계학설 제 12조와 제 13조 및 건설부령 제 41호 (77.3.16) 권한 규정 규정에 의거 정정된 퇴계학설에 따라 한다

2. 관계되는 서울특별시 퇴계학설에 대하여 토지유주 및 이해 관계인에게 쓰에게 한다.

1977. 8. 8
서울특별시 장

공익 필요 및 설치 목적: 별첨

"제3항"

수신: 건설부 장관

발신: 서울

제목: 같은 것

1. 영시 퇴계학설(공익)에 대하여 별첨 과문서본 및 관계면과 같이 필요 설정사항을 알립니다

첨부: 도시계획 및 관계면 각 1부

"제4항"

수신: 서울특별시(공익)장관

발신: 서울특별시(공익)장관

1. 별첨과 같이 서울특별시(공익)장관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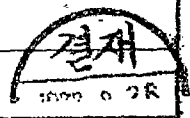
첨부: 도시계획 및 관계면 각 1부

제5항

수신: 문화재 담당관, 공익과장

25

제목: 같은 것



1. 영시 퇴계학설(공익)을 별첨조서 및 도면과 같이 설치할 수 있도록 정정된 퇴계학설에 따라 관계면과 같이 알립니다. 관련 부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하

철부: 고등서본 및 관계도면 각부

1972. 12. 29
시정

"제6판

수원: 증류청장 증류청장

제본: 생공원 실로 및 생공원

1. 및 1의 제본 생공원(공공)은 다음과 같이 생공
및 결정하의 통치하 관련 업무에 적용 가능한
조치바람

철부: 고등서본 및 관계도면 각부 "공"

공무원 조서 (상근, 상설 및 자적승인)

구분	공무원종류	공무원명	위 치	면 적	비 고
상근	아동공원	상설공원	중구 상설동 7번	1696	
상설	"	"	"	"	
"	"	보안공원	중구 관천동 4번	2814	

변경 단면 등서인 같은 (단면생략)을

